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(안)

의안 번호	4-2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-1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 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
제21조의 규정에 따라
-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의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
제1항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"정원"이라 한다)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 청 : 892 명
2. 직속기관 : 840 명
4. 사업소 : 369 명
5. 출장소 : 230 명

제3조(직급별 정원의 규정)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.
- ③ (한시정원) 이 조례에 의하여 본청 및 사업소에 두는 정원 중 본청 통합시준비요원 1명은 1995년 2월 28까지, 본청 정책보좌관 3명과 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 정원 25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, 충청북도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의 정원 20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참 고 자 료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

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(대통령령)

제21조 (정원의 규정)

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1. 본청
- 2. 직속기관
- 3. 출장소
- 4. 사업소
- 5. 읍·면·동 및 그 출장소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제3조 (기구·정원에 대한 조례·규칙에 대한 경과조치)

이 영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·규칙은 이 영에 의하여 새로운 조례 및 규칙이 제정·시행 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칙 제4조 (기구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

① 이 영 시행 당시 설치 및 책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 및 책정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(이하 “현정원”이라 한다)이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